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50

제안년월일 : 2001. 2. 16.
제 안 자 : 경제 · 사회위원장

1. 제안경위

가. 2월13일 정권섭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제 · 사회위원회에 접수되어, 2월 14일 제1차 경제 · 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

나. 2월 16일 제3차 경제 · 사회위원회에 다시 상정 심사, 의결하여 동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.

2. 제안이유

가. 그 동안 청정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던 본 조례가 보급율 70%에 이를 때까지만 시행토록한 경과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것은 현재 안산시 여건상 공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급한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고,

나.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됨.

다.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융자금액을 증액하고 이자를 줄여 도시가스 수요가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시키고 조기에 공급을 완료하여 공해예방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대출한도액을 시 예치금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출한도 금액을 3백만원으로 조례에 정하고, 다가구 주택은 8백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 제1항)

나. 대출금리를 현행은 일반대출금리 보다 2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하도록 하던 것을 3퍼센트로 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 제3항)

다.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현행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한 것을 각종 회의 개의 정족수 통례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 제2항)

라. 기금의 결산은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결산기일 등을 조정함. (안 제12조)

마. 도시가스 보급이 일부 동에는 공급 공사중에 있거나 전혀 공급이 되지 않는 등 본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평균 보급율 7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로 규정하였던 본 조례 시행기간을 평균 보급율이 85퍼센트에 달할 때 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함. (안 부칙 제3항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융자조건) ①대출한도액은 시예치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시장의 협약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. ②대출지원범위는 시설설치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. ③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 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하여야 한다. ④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금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⑤~⑥(생략)	제9조(융자조건) ①대출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. (삭 제) ③..... 3퍼센트..... ④..... .... (단서삭제) ⑤~⑥(현행과 같음)
제21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(생략)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1조(기금결산) ①.....80일..... ..... ②(현행과 같음) ③..... .....다음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부 칙	부 칙
③(시행기간)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0%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.	③..... .....보급이 지속하는 한 계속 시행한다.

수 신 : 경제·사회위원장 2001. 2. 13.

제 목 :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

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1부. 끝.

발의자 정 권 섭 ㊞
외 1인

(찬성자 서명 붙임)